

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[별표 2] <개정 2025. 12. 30.>

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
관세율표 번호		품명	규격 등	세율 (%)	한계수량
호	소호				
0408		새의 알(껍질이 붙지 않은 것)과 알의 노른자위(신선한 것, 건조한 것, 물에 삶았거나 찢은 것, 성형한 것,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,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)			
0408	1	알의 노른자위			
0408	11	건조한 것	닭[갈루스 도메스티쿠스 (<i>Gallus domesticus</i>)종으로 한정한다]의 것	0	
0408	19	기타	닭[갈루스 도메스티쿠스 (<i>Gallus domesticus</i>)종으로 한정한다]의 것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	0	4,000톤
0408	9	기타			
0408	91	건조한 것	닭[갈루스 도메스티쿠스 (<i>Gallus domesticus</i>)종으로 한정한다]의 것	0	
0408	99	기타			

		1. 닭[갈루스 도메스티쿠스 (<i>Gallus domesticus</i>)종으로 한정한다]의 것	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	0	
3502		알부민(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)·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			
3502	1	알의 흰자위(egg albumin)			
3502	11	건조한 것	식품 원료용의 것	0	
3502	19	기타	식품 원료용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	0	
0811		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(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 것으로 한정하며,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)			
0811	10	초분류 딸기		5	5,000톤
0811	90	기타	과실로 한정한다.	5	10,000톤
1512		해바라기씨유·잇꽃유·목화씨유와 그 분획물(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)			
1512	1	해바라기씨유·잇꽃유와 그 분획물			

1512	19	기타			
		1. 정제유(精製油)			
		가. 해바라기씨유		0	5,000톤
1803		코코아 페이스트(paste)[탈지(脫脂)한 것인지에 상관없다]			
1803	10	탈지(脫脂)하지 않은 것		0	수입 전량
1804	00	코코아 버터(지방이나 기름)		0	수입 전량
1805	00	코코아 가루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)		0	수입 전량
2008		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·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			
2008	20	파인애플		15	8,000톤
2008	30	감귤류 과실	유자는 제외한다.	15	1,000톤
2008	9	기타(혼합물을 포함하되, 소호제2008.19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)			
2008	97	혼합물			

		1. 과일 칩			
		가.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		20	5,500톤
		나. 기타		15	
		2. 기타	과일 샐러드 및 그 밖의 과일 혼합물의 것으로 한정한다.	15	
2008	99	기타			
		6. 기타	과일로 한정한다.	15	7,500톤
2009		과실·견과류 주스(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)·채소 주스[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)]			
2009	7	사과주스			
2009	79	기타		15	1,500톤
2709	00	석유와 역청유(瀝靑油)(원유로 한정한다)			
		1. 석유			
		가.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.796 초과 0.841 이하인 것			
		나.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.841 초과 0.847 이하인	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	0	16,500,000 배럴

		것	원유	
		다.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.847 초과 0.855 이하인 것		
		라.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.855 초과 0.869 이하인 것		
		마.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.869 초과 0.885 이하인 것		
		바.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.885 초과 0.899 이하인 것		
		사.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.899 초과 0.904 이하인 것		
		아.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.904 초과 0.966 이하인 것		
		자. 기타		
		2. 역청유(瀝靑油)		
2711		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 의 탄화수소		
2711	1	액화한 것		
2711	12	프로판	0	수입 전량

2711	13	부탄			0	
------	----	----	--	--	---	--